
복지교육국

복지과



(코로나19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(성립전))(P - 31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6월 ~ 12월
- 위 치 : 김포시 사우중로 1와 580개소
- 사업규모 : 취약계층 돌봄인력 6,634명/ 1인당 80매 지원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코로나19 장기화로 '취약계층 돌봄인력'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 구입·지원을 통하여 돌봄인력의 감염예방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함.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0	238,824	0	0	238,824	238,824	
국 비	0	238,824	0	0	238,824	238,824	
도 비							
시 비							
기 타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약계층 돌봄인력의 방역강화를 위해 마스크 구입·지원을 위한 성립전 예산 편성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34조(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의 수립·시행)
근거내용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12440(2121. 4. 19.)호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의결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감염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 돌봄인력의 방역강화를 위해 마스크를 구입·지원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2회추경 요구액	비 고
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	301-01 사회보장적수혜금	·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 450원 × 6,634명 × 80매 =	238,824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 6. : 납품업체 결정 및 계약
- 2021. 7. : 물품(마스크) 시설 배송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복지과	복지정책팀장 채혜영	담당자	행정7급 최규현	전화	2616
-----	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긴급복지(성립전)) (P - 31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연중
- 사업규모 : 2,474가구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실직, 중한 질병, 폭력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4,454,950	2,169,629	2,049,145	0	120,484	-2,285,321	
국 비	3,563,960	1,759,800	1,639,316	0	120,484	-1,804,160	
도 비	133,648	61,474	61,474	0	0	-72,174	
시 비	757,342	348,355	348,355	0	0	-408,987	
기 타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긴급복지 위기 사유 확대 및 대상자 증가에 따른 지원 예산 증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긴급복지지원법	제4조 제1항
근거내용	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, 지원 종류·내용·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법·제도 기준 초과 등으로 적절한 보호가 어려운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·의료·주거비 지원
- 선 지원, 후 심사를 통한 신속지원으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안전망 기능 확대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	비 고
긴급복지 지원사업	301-01 사회보장적수혜금	· 긴급복지지원 889,000원 × 2,474가구 =	2,169,629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수시 : 위기가구 발굴 및 현장조사
- 수시 : 긴급지원 대상자 신청 접수 및 사후조사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-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생계비 등 지원(총 1,802가구, 977,716천원)	
2020년	-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생계비 등 지원(총 5,210가구, 3,861,404천원)	
2021년	-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생계비 등 지원(총 2,864가구, 1,827,124천원)	6.30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978,000	977,716		284	
2020년	4,454,950	3,861,404		593,546	
2021년	2,169,629	1,827,124		342,505	6.30일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복지과	희망복지팀장 홍지혜	담당자	사회복지8급 이숙희	전화	2633
-----	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

(코로나19 생활지원비(성립전)) (P - 31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연중
- 사업규모 : 4,434가구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법령에 의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한 지원 필요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800,000	3,556,798	790,000	827,128	1,939,670	2,756,798	
국 비	400,000	1,972,832	395,000	413,564	1,164,268	1,572,832	
도 비	266,400	1,313,906	263,070	275,434	775,402	1,047,506	
시 비	133,600	270,060	131,930	138,130	0	136,460	
기 타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2021년 본예산 대비 코로나19 확산으로 자가격리자 가구 증가에 따른 지원금 증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-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-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	-제70조의 4 -제28조의 5
근거내용	① 질병관리청장,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,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생활지원비: 질병관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-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격리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급

< 생활지원비 기준 >

(단위 : 원/월)

가구 구성원수	1인	2인	3인	4인	5인
생활지원비	474,600	802,000	1,035,000	1,266,900	1,496,700

- 1) 지원대상자가 **외국인인** 경우, **1인 가구**로 적용
- 2) 가구 구성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,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2회추경 요구액	비 고
생활지원비 지원사업	301-01 사회보장장 수혜금	· 생활지원비 지원 802,000원 × 4,434가구 (2인가구 14일 격리자) =	3,556,798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- 생활지원비 지원 : 1,021가구/3,041명 - 생활지원비 지급액 : 799,381천원(99.9%)	
2021년	- 생활지원비 지원 : 2,907가구/7,820명 - 생활지원비 지급액 : 2,588,343천원(73%)	6.30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800,000	799,381	-	1,029	
2021년	3,556,798	2,588,343	-	968,455	6.30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복지과	희망복지팀장 홍지혜	담당자	사회복지7급 인우영	전화	2632
-----	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

(코로나 피해대책 「한시생계지원사업(성립전)」 (P - 32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4. ~ 7.
- 사업규모 : 2,200가구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가구 대상 한시 생계지원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0	1,128,980	0	0	1,128,980	1,128,980	
국 비	0	1,128,980	0	0	1,128,980	1,128,980	
도 비							
시 비							
기 타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코로나-19의 4차 피해지원 대책 「한시생계지원」 정부 1차 추경 반영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내시
- ※ 중앙사고수습본부-13739('21.4.29), 복지사업과-10428('21.6.10)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중위소득 75%이하, 재산 3.5억원 이하의 소득이 감소한 가구의 생계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(지원금액 : 1가구 50만원 1회 현금지급)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긴급복지지원법	제4조 제1항
근거내용	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, 지원 종류·절차와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의결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2회추경 요구액	비 고
합 계			1,128,980	
한시생계지원	301-01 사회보장적수혜금	· 500,000원 × 2,200가구 =	1,100,000	
보조인력 인건비	101-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	· 2,415,000원 × 12명 × 1개월 =	28,980	

□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

○ 신청·접수 : 5 . 10 ~ 6. 4

사업량	신청가구			결정내역		
	신청 (a)	취소 (b)	접수(a-b)	적 합	부적합	기타(중복확인중)
2,200	2,720	97	2,623	1,930	690	3

○ 지원금 지급 : 1,930가구 962,900천원

- 1차 : 6. 25(금) 1,923명 961,500천원(50만원)

- 2차 : 6. 28(월) 7명 1,400천원(소규모 농가 차액 20만원)

○ 부적합(중복사업) 대상자 이의신청 및 추가지급 : 7. 12

○ 사업비 정산 및 환수조치 등 : 7월말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1년	○ 지원금 지급현황 : 1,930가구 962,900천원 - 1차(6. 25) 1,923명 961,500천원 (50만원) - 2차(6. 28) 7명 1,400천원(소규모 농가 차액 20만원)	6.30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1년	1,128,980	962,900		166,080	6.30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복지과	한시생계T/F팀장 임미란	담당자	사회복지8급 최유경	전화	1931
-----	-----	--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

복지교육국

교육청소년과



(위기극복 비대면 교육비(통신비) 지원) (P - 33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7월 ~ ○ 위 치 : 관내외 학생 등
- 사업규모 : 관내 초·중·고, 특수학교, 대안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, 관외 진학생(김포시 거주) 등 63,008명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에서의 온라인 학습 증가에 따른 통신비용 지원으로 가정 경제부담 완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

○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0	6,300,800	0	0	6,300,800	6,300,800	
국 비							
도 비							
시 비	0	6,300,800	0	0	6,300,800	6,300,800	
기 타							자부담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코로나19로 가정에서의 온라인 학습량이 증가함에 따른 통신비용 지원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	제4조, 제5조 제3,4호, 제6조 제2호
근거내용	제4조(생활안정지원) 김포시장은 코로나19의 발생·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(지원 대상) 제3,4호 제3호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제4호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프로그램 또는 이에 준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만7세 이상 만18세 이하 청소년 제6조(지원내용) 제2호 비대면 교육을 위한 학습지원비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코로나19로 가정에서의 온라인 학습량이 증가하여 가정의 통신비 부담 증가
- 통신비 증가로 부담을 겪고 있는 각 가정에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부담 완화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2회추경 요구액	비 고
공 통	302-02	총 합	6,300,800	
위기극복 비대면 교육비 (통신비)지급	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금	관내·외 학생 등 100,000원 × 63,008명 =	6,300,8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 3월 : 비대면 교육비(통신비) 지원 계획수립
- 2021. 7월 : 예산편성
- 2021. 8월 : 지원 공고 및 대상자 확정, 지원금 지급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교육청소년과	교육정책팀장 한흔지	담당자	행정7급 지연정	전화	2568
-----	-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사립유치원 위기극복 방역비용 지원사업) (P - 33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7월 ~
- 사업규모 : 관내 사립유치원 45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코로나19장기화로 방역관련 업무가중 및 방역비 지출이 증가한 사립유치원에 방역비용을 지원하여 운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0	22,500	0	0	22,500	22,500	
국 비							
도 비							
시 비	0	22,500	0	0	22,500	22,500	
기 타							자부담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관련 업무 및 방역지출이 증가된 사립유치원에 비용 지원하고자 함.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	제4조, 제5조 제5호, 제6조 제3호
근거내용	제4조(생활안정지원) 김포시장은 코로나19의 발생·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(지원 대상) 제5호 제5호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제3호에 따른 시에 등록된 사립유치원 제6조(지원내용) 제3호 방역지원비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업무 및 방역비 지출이 증가한 사립유치원의 운영부담을 완화하고자 방역비용을 지원하고자 함.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2회추경 요구액	비 고
공 통	302-02	총 합	22,500	
사립유치원 위기극복 방역비용 지원사업	민간인 재해 및 복구 활동금	· 500,000원 × 45개월 =	22,50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 5월 : 사립유치원 위기극복 방역비용 지원 계획수립
- 2021. 7월 : 예산편성
- 2021. 8월 : 지원 공고 및 대상자 확정, 지원금 지급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교육청소년과	교육정책팀장 한흔지	담당자	행정7급 지연정	전화	2568
-----	-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성인문해교육운영(보조)(성립전)) (P - 33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6월 ~ 12월
- 사업규모 : 10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교육 소외계층을 위해 교·강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문해교육 지원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14,000	5,000			5,000	-9,000	
국 비	7,000	5,000			5,000	-2,000	
도 비							
시 비	7,000					-7,000	
기 타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2021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('21. 4. 29)에 따른 사업운영비 편성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평생교육법	제39조 제1항, 제3항
근거내용	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의 사회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능력 등 기초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공유재산 관리계획	학술용역비 사전심사	정보화사업 사전협의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2021년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'가정방문형 문해교실' 공모 선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
- 문해교육기관에 접근이 어려운 학습자를 위해 교·강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문해교육 지원
- 교육 소외계층(비문해자, 이주여성, 장애인 등)을 위한 학습자 발굴 및 문해교육 수혜 대상자 확대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2회추경 요구액	비 고
공 통			5,000	
성인문해교육 운영(보조)	201-01 사무관리비	·교재구입비 : 10,000원*10명*5권 =	500	
	301-09 행사실비지원금	·교통비 : 5,000원*5명*30회 =	750	
	301-12 기타보상금	·강사수당 : 25,000원*5명*30회 =	3,750	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(계획수립, 사업추진절차 및 내용 자세히 작성)

- 2021.07. : 어디든 학교 교육 강사 모집
- 2021.08. ~ 2021.11. :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
- 2021.12. :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○ 교육기간 : 2019.5~12월 ○ 사업대상 : 비문해·저학력 성인 ○ 교육강좌 : 생활문해교육과정(즐거운글쓰기, 영어야놀자)2개프로그램 별도운영 ○ 수 료 율 : 62.5%	
2020년	○ 코로나19로 대면교육이 어려워짐에 따라 프로그램 미운영 ※ 2개프로그램 개설 및 22명 모집	
2021년	○ 어디든 학교 학습자 모집중	6.30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14,100	11,793		2,306	
2020년	14,000	113		13,887	코로나19로 미운영
2021년	5,000	0		5,000	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교육청소년과	평생학습팀장 채혜영	담당자	임기제마금 이지은	전화	5149
-----	-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	----	------

복지교육국

노인장애인과



(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)(성립전) (P - 35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1.~12
- 사업규모 : 9명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로 사망한 자의 유족이 감염병예방법, 장례관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장례비 및 전파방지비용을 지원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11,715	115,742	0	1,285	114,457	104,027	
국 비	11,715	115,742	0	1,285	114,457	104,027	
도 비							
시 비							
기 타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급대상자 증가로 증액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	제67조제5의2호
근거내용	제67조(국고 부담 경비)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. 5의2. 제20조의2에 따라 시신의 장사를 치르는 데 드는 경비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사망자 시신으로 인한 감염 전파 방지 및 예방 조치를 위해 지원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2회추경 요구액	비 고
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지원	301-01 사회보장적수혜금	· 장례지원비 : 10,000,000원*9명 =	90,000	장례지원비 1인당 10,000천원 지원 (정액지급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(자세하게 작성)	2회추경 요구액	비 고
		전파방지비용 : 1,000,000원*7명 = 200,000원*4명 769,000원*1명 1,231,000원*1명 1,150,000원*1명 1,500,000원*1명 1,860,000원*1명 1,200,000원*1명 747,000원*1명 466,250원*1명 733,750원*1명 800,000원*1명 1,209,800원*1명 790,200원*1명 1,108,890원*1명 891,110원*1명 1,086,000원*1명 714,000원*1명 400,000원*1명	24,457	전파방지비용 1인당 최대 300백만원 지원 (실비지급)

□ 사업 추진계획 (시설비 등 투자사업 외)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0.11.~2020.12. :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지급
- 2021.05. : 2020년도 장례지원비 부족분 지급
- 2021.05. : 2021년도 사망자 장례지원비에 대한 성립전예산 편성 승인 및 지급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1,715천원 지급	'20년 신규사업
2021년	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115,742천원 지급	6.30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 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11,715	11,715	0	0	
2021년	115,742	115,742		0	6.30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노인장애인과	노인시설팀장 정진우	담당자	시설9급 장기영	전화	2215
-----	---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	----	------

(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)(성립전) (P - 35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1. 1. ~ 2021. 12. 31. ○ 위 치 : 관내
- 사업규모 : 75명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활동지원사 연계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의 시간당 단가에 가산수당 지급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63,516	147,880	59,884	0	87,996	84,364	
국 비	44,461	124,600	41,919	0	82,681	80,139	
도 비	2,858	8,010	2,695	0	5,315	5,152	
시 비	16,197	15,270	15,270	0	0	-927	
기 타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2021년 활동보조 가산급여 변경내시(2차), [경기도 장애인복지과-8533(2021. 4. 16.)호]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	제39조제1항
근거내용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동의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가산급여 적용 수급자의 증가로 인한 예산 부족(기준 : 26명→ 변경 : 75명)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2회추경 요구액	비 고
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	308-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 탁사업비	· 가산급여 : 197,800원*62명*12월 =	147,88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01. ~2021.12. : 사업 시행
- 2021.04. : 활동보조 가산급여 변경내시(2차) 공문
- 2021.05. : 국도비 보조금 교부(3차)
- 2021.8. ~ 2021.12. : 결과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, 예산 추계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제공인력 : 62명	
2020년	제공인력 : 60명	
2021년	제공인력 : 67명	6.30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21,274	21,274		0	
2020년	63,516	63,516		0	
2021년	147,880	147,880		0	6.30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노인장애인과	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	담당자	사회복지9급 장근모	전화	2629
-----	--------	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

(장애인활동지원 긴급,특별돌봄)(성립전) (P - 35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5. 1. ~ 2021. 12. 31.
- 사업규모 : 약 51명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코로나19시기 초·중·고교생 재학생 가정 내 돌봄부담을 완화하고, 거주시설 내 집단감염 발생 시 장애인에게 긴급활동지원을 제공하여 이용자에 대한 삶의 질 향상 도모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0	128,140	0	0	128,140	128,140	
국 비	0	120,400	0	0	120,400	120,400	
도 비	0	7,740	0	0	7,740	7,740	
시 비							
기 타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긴급특별돌봄지원 국도비 보조금 통보(확장내시) [경기도 장애인복지과-8582(2021. 4. 19.)]
-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학생 특별지원급여 지급 안내 송부[경기도 장애인복지과-9529(2021. 4. 29.)]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	제39조제1항
근거내용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.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■	계속사업□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의결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□	보조재원■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코로나 19 장기화로 학교 돌봄이 필요하나 등교하지 못하는 장애인 학생 증가
- 가정 내에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나, 가족의 사회·직장생활 등으로 돌봄의 공백 발생
-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격리된 장애인 보호
-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, 특별사업 실시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2회추경 요구액	비 고
장애인활동지원 긴급, 특별돌봄	308-11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 탁사업비	· 560,000원*38명*최대 6월 =	128,140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04. : 긴급·특별돌봄지원 국도비 보조금 통보 확정내시 공문
- 2021.05. :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개시(수시)
- 2021.05. : 국도비 보조금 교부
- 2021.05. ~ 2021.12. : 사업 시행
- 2021.11. ~ 2021.12. : 결과평가 및 사후관리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19년	-	
2020년	-	
2021년	약 124명 신청, 34명 지원 중	6.30일기준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19년	-	-		-	
2020년	-	-		-	
2021년	128,140	-		128,140	6.30일 기준 실 집행현황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노인장애인과	장애인복지팀장 이민호	담당자	사회복지9급 장근모	전화	2629
-----	--------	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	----	------

복지교육국

보육과



(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지원) (P - 37)

□ 사업개요

- 사업기간 : 2021. 8월 ~ 9월
- 사업규모 : 관내 민간·가정·협동 어린이집 384개소
-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: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
- 예산요구 현황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20년 예산액 (A)	2021년 예산액				2020년 예산 대비 증감 (B-A)	비고
		계 (B=C+D+E)	본예산 (C)	1회 추경 (D)	2회 추경 (E)		
계	606,800	207,785			207,785	-399,015	
국 비							
도 비							
시 비	606,800	207,785			207,785	-399,015	
기 타							

□ 예산 증감사유

-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에 긴급 운영비 지원

□ 법적근거

근거법령	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	제4조, 제5조, 제6조
근거내용	제4조(생활안정 지원) 김포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코로나19의 발생·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. 제5조(지원대상) 시장은 김포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·시설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(이하 “지원대상자”라 한다)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7. 「영유아보육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시에 등록된 민간·가정·협동어린이집 8. 「영유아보육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시에 등록된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제6조(지원내용)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5. 제5조제7호: 운영비 6. 제5조제8호: 차량운영비	

□ 사업성격 및 사전절차 이행여부

사업성격		사전절차 이행여부						
신규사업□	계속사업■	중기지방 재정계획	투자심사	용역과제 심의	공유재산 관리계획	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	민간위탁 의회의결	출연·출자 의회의결
경상■	자본□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	비대상
자체재원■	보조재원□	-	-	-	-	-	-	-

□ 예산요구 필요성 및 사업내용

-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및 긴급돌봄으로 인한 재원 아동수 감소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운영비 및 차량운영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교직원 지속적인 고용 도모
- 민간·가정·협동 어린이집 운영비 개소당 500천원 지급
-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개소당 385천원 지급

□ 사업비 산출내역

(단위 : 천원)

사업명	통계목	사업내용 및 산출내역	2회추경 요구액	비 고
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지원	302-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	합 계 =	207,785	
		·민간·가정·협동 어린이집 : 500,000원*384개소*1회 =	192,000	
		·농어촌지역 차량운영비 : 385,000원*41개소*1회 =	15,785	

□ 사업 추진계획

○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

- 2021. 8월초 :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지원 공고 및 신청서 접수
- 2021. 8월말 : 어린이집 긴급 운영비 지원금 지급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

○ 최근3년 추진실적

구분	주요사업내용(추진실적)	비고
2020년	- 코로나19로 재원 아동수 감소한 민간·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(288개소) - 농어촌지역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(41개소)	
2021년	-	

○ 최근3년 집행현황

(단위 : 천원)

연 도	예산현액 (예산액+이월액)	집 행 액	다음연도 이월액	집행잔액	비고
2020년	606,800	580,096		26,704	
2021년	-	-		-	

□ 사업부서 및 담당자

부서명	보육과	보육지원팀장 송지연	담당자	사회복지7급 정미정 사회복지8급 유은채	전화	4108 4109
-----	-----	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	--------------